

식품·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보고인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		휴대전화
영업소	명칭(상호)	영업등록번호
	소재지	
제품정보	식품의 유형	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
	제품명	
	유통기한	제조일부터 일(월, 년)
	품질유지기한	제조일부터 일(월, 년)
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	
	용도 용법	
	보관방법 및 포장재질	
	포장방법 및 포장단위	
	성상	
	품목의 특성	
기타	▪ 고열량·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 []해당 없음	
	▪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(식품첨가물)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제조방법설명서 1부
	2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·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
	3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
	4.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(할랄인증 식품의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(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)

No.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No.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유의사항

1.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
3.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.